

자동차 금융리스 약정서



자동차 금융리스 약정서

여신금융협회 약관신고 수리일자 : 2019.12.24

대한민국 정부
인 지 세
10,000 원
남대문세무서장
후납승인2014년15호

리스회사용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주) 귀중

리스이용자와 연대보증인은 아래 리스차량 및 공급자에 대한 정보가 맞음을 확인하고, 리스조건표 및 첨부된 약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잘 이해한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리스회사와의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본 계약서 사본을 수령하였습니다. ("리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정한 시설대여를 의미합니다.)

년 월 일

| 리스 차량 정보 | | | | |
|--------------|--|---------|---------|----------|
| 차종 / 모델 / 색상 | 등록 명 의 | 차 량 가 격 | 읍 선 | 총 차량 가격 |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금융회사 | 원 | 원 | 원 |
| 차 대 번 호 | 계 약 대 수 | 판 매 사 | 판 매 직 원 | 금융 담당 직원 |
| | 1 대 | | | |

| 리스 조건 | | | | |
|-----------------------|--|----------|---|-------------|
| 리 스 기 간 | <input type="checkbox"/> 12개월 <input type="checkbox"/> 24개월 <input type="checkbox"/> 36개월 <input type="checkbox"/> 48개월 <input type="checkbox"/> 60개월 <input type="checkbox"/> ()개월 | | | |
| 상 환 방 식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리금균등분할 | | | |
| 납 입 조 건 | <input checked="" type="checkbox"/> 후불 | | | |
| 이 자 율 | | | | % |
| 원 금 | | | | 원 |
| 선 납 금 | | | | 원 |
| 잔존가치/유예금 | | | | 원 |
| 리스 종료 시 처리 | 재리스, 구매 중 택일 (* 단, 재리스는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함.) | | | |
| 결 제 방 법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동이체 | | | |
| 교 통 범 칙 금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납 | | | |
| 자 동 차 세 포 함 여 부 | <input type="checkbox"/> 포함 (₩)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불포함 | |
| 보 험 료 포 함 여 부 | <input type="checkbox"/> 포함 (₩)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불포함 | |
| 월 리 스 료 | | | | 원 |
| 보증금/선납금 납입에 따른 예상 할인율 | 보증금 / 선납금 / 선납리스료에 따른 리스료의 예상 할인을 및 할인 금액 ()% / ()원 | | | |
| 규 정 손 해 배 상 금 | 미회수원금 x 규정손해배상금 최고요율()% x (잔여 개월수 / 총 리스 계약 개월수) | | | |
| 승 계 수 수 료 | 미회수원금 x 승계수수료 최고요율(2)% x (잔여 개월수 / 총 리스 계약 개월수) | | | |
| | 승계수수료 최소 금액 | 90,000 원 | 승계수수료 최대 금액 | 1,000,000 원 |
| 지 연 배 상 금 율 | 연 ()% *약정이자율 + 최대 3%, 법정 최고 금리 이내 | | | |
| 보 증 조 건 | 보 증 채 무 최 고 액 | 원 | 보 증 기 간 | 개월 |

| 보 험 조 건 | | | | |
|--|--|---|---|--|
| * 리스기간 동안 보험료를 본 계약에 포함시키는 약정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 | | |
| 보 험 관 리 주 체 | <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 <input type="checkbox"/> 리스 이용자 | 보 험 사 | | |
| 운 전 자 연 령 | <input type="checkbox"/> ()세 이상 <input type="checkbox"/> 전 연령 | 대 상 구 분 | <input type="checkbox"/> 개인용 <input type="checkbox"/> 업무용 | |
| 가 입 조 건 | <input type="checkbox"/> 가족 한정 <input type="checkbox"/> 부부 한정 <input type="checkbox"/> 본인 한정 <input type="checkbox"/> 누구나 운전 | 기 타 : () | | |
| 의 무 가 입 사 항 | <input type="checkbox"/> 대인배상 I II <input type="checkbox"/> 대물 <input type="checkbox"/> 자손 <input type="checkbox"/> 자차 | 기 타 : () | | |
| 필수선택 가입사항 | 대물 배상 사고 | <input type="checkbox"/> 5천만원 <input type="checkbox"/> 1억원 <input type="checkbox"/> 2억원 <input type="checkbox"/> 무한 | 자기신체사고 | <input type="checkbox"/> 1천만원 <input type="checkbox"/> 5천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
| 주요 안내 사항 | <p>1) 규정손해배상금: 리스만기일 도래 전에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를 고객님의 명의로 이전하고자 할 경우 금융회사의 손해에 대해 부담하여야 합니다. (규정손해배상금률은 잔여기간에 따라 하향) 이 경우 규정손해배상금과 미회수원금의 합계금액은 당초 계약에 따른 잔여리스료와 잔존가치의 합계금액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p> <p>2) 선납금/선납리스료: 고객이 지급한 선납금은 다음 각 호의 처리 방법을 설명하고 이 중에 고객과 금융회사가 합의한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합니다.</p> <p>① 리스실행일 이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자동차 구입가격에서 공제하여 리스료를 산정</p> <p>② 리스실행일 이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자동차 구입가격에서 공제하여 리스료 재산정 (다만, 선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 23 조에서 정한 규정손해배상금률을 적용한 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음.)</p> <p>③ 리스실행일 이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잔여리스차로 나누어 매월 리스료에 충당</p> <p>④ 리스실행일 이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향후 도래할 리스료에 충당</p> <p>(* 단, 상기 선납금/선납리스료 처리 방법 중 당사는 ③번과 ④번의 방법을 제공하며, 그 중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처리합니다.)</p> |
|----------|---|

| | | | |
|--|--|------------------|----|
| 연대 보증인의 입보가 가능한 경우 * 아래 기재사항은 보증인의 담보능력 파악, 계약내용 전달 등을 위해 취득하는 정보입니다. | | | |
| 연 대 보 증 인 | 차주가 개인사업자일 때 <input type="checkbox"/>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 | | |
| | 차주가 법인일 때 (1인) <input type="checkbox"/> 최대주주 <input type="checkbox"/> 특수관계인 포함 과점/대주주(30%이상) <input type="checkbox"/> 대표이사 <input type="checkbox"/> 무한책임사원 | | |
| | 자동차 구입 때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의 차량구입 시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 <input type="checkbox"/> 영업목적 차량 구입 | | |
| | 기 타 <input type="checkbox"/> 상기 외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 조 제 2 항 제 4 호, 제 5 호에 해당 | | |
| 보 증 종 류 | 특정근보증: 당해채무 (기간연장 증액포함), 한정근보증: 특정+동일종류신규대출 <input type="checkbox"/> 특정근보증 <input type="checkbox"/> 한정근보증 (단, 장애인 영업목적용 차량 구입시 100%) | | |
| | 연 대 보 증 인 | | |
| 신 인 | 성명 (인) 생년월일 | | |
| | 자택주소 |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 |
| | 직장(사업자)명 | 부서명 | |
| | 직위 | 재직(사업)기간 | |
| 보증내용 | 보증최고채무액 원 | 보증기간 | 개월 |
| (* 본 약정에 따른 여신취급액 (금융회사가 본 약정의 이행을 위해 지급한 금액의 총액)의 130%입니다. (단, 자동차 구입시 100%)) | | | |

| | |
|----------|--|
| 기타 특약 사항 | |
|----------|--|

| | |
|-----------|---|
| 계약관련 고지사항 | <p>1. 리스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리스종류 및 등록명칭에 상관없이 리스회사에 있습니다.</p> <p>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 시 고객께서는 상기 내용을 제공하셔야 하며, 제공하신 정보는 동법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은 기재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문서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된 정보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p> |
|-----------|---|

| | |
|-------|---|
| 리스 회사 | <p>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주)</p> <p>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10층 (남대문로5가, 서울스퀘어빌딩)</p> <p>대표이사 프리츠 빌헬름 카바움</p>  |
|-------|---|

| | |
|---------|--|
| 금융담당 직원 | <p>리스이용자 및 연대보증인의 본인확인 및 자필서명을 확인하였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성 명 : 서명</p> |
|---------|--|

리스이용자(본인) 및 연대보증인은 본 계약의 주요 내용인 신청사항 및 리스조건 세부사항 그리고 약관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본인 의사에 따라 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 | |
|------------|---|
| 신청인 (본인) |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신청인 (본인) : (인)</p> |
|------------|---|

| | |
|-------|---|
| 연대보증인 | <p>연대보증인 1 : (인) 연대보증인 2 : (인)</p> |
|-------|---|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여신금융협회 사후보고 접수일자: 2021.11.02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리스이용자(이하"고객"이라 합니다)가 직접 선정한 자동차를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가 주선회사(이하"금융회사"라 합니다)가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고객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실에서 계약에서 금융회사와 고객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자동차 시설택대(이하"리스"라 합니다)라 함은 고객이 직접 선정한 자동차를 자동차 판매사(이하"매도인"이라 합니다)로부터 금융회사가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고객에게 임정기간 이상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사용기간이 끝난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시설택대 행위를 의미합니다.
- "리스자동차(이하 "자동차"라 합니다)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자동차를 금융회사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구입하여 리스자동차(이하 "약정서"라 합니다)에 기재한 자동차를 의미하며, 인도시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일체의 부착물 등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 "격약순해금"이라 함은 자동차 사고시 자동차의 급격한 시세하락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 합니다.
- "임의보험"이라 함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가입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보험의 형태로, 의무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을 뺀 나머지 보험을 의미합니다.
- "규정순해배상금"이라 함은 고객이 계약의 종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할 때 제23조에 따라 금융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중도해지순해배상금"이라 함은 고객이 계약의 종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때 제24조에 따라 금융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지연배상금"이라 함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리스로 등 이 약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제29조 제항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반환지연금"이라 함은 리스계약 종료시 계약에 따라 고객이 자동차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체한 경우, 제29조제4항에 따라 고객이 금융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초과운행부담금"이라 함은 운용리스 계약 종료 시 고객이 자동차를 반환하는 시점에 금융회사와 계약한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경우 제27조에 따라 금융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미회수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가격을 포함하여 리스계약 체결을 위해 소요된 비용 중 리스로 등을 통해 회수되지 아니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리스회사가 리스계약 체결을 위해 소요된 비용은 자동차대입가격, 취득세, 자동차 구입을 위한 렌탈매입원할비용, 기타 부대비용(타승료 등) 등이 포함됩니다.
- "리스료"라 함은 운용리스의 경우 고객이 금융회사에게 사용료로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금융리스의 경우 원금에 대한 분할 상환금액 및 이자로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해피콜"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리스계약 내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자 본인에게 유선으로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리스의 종류)

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모든 위험과 편익이 고객에게 이전되는 리스는 금융리스, 그 외의 리스는 운용리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정서 필수기재사항)

리스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 고객정보, 금융회사정보, 자동차정보
- 리스종류, 리스료, 리스기간, 등록명의 구분, 이자율(금융리스의 경우에 한함)
- 규정순해배상금, 중도해지순해배상금, 지연배상금, 반환지연금, 승계수수료 등 고객이 부담하는 상환요율
- 보증금, 선납금, 잔존가치, 계약주행거리

제5조 (금융회사 및 고객의 주요 준수사항)

- 금융회사는 리스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을 제9조에 따라 리스계약 조건 및 그와 관련한 사항을 고객에게 반드시 설명하여야 하며 고객이 금융회사의 설명을 이해하였음을 고객 본인의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이 리스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해피콜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 금융회사는 리스계약이 체결된 경우 리스계약서본, 계약사실증명문 등 리스계약관련 서류 일체와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및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서면, 우편, 이메일, 휴대문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게 된 때 지체없이 고객에게 교부(전자문서를 통한 계약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교부 가능)해야 합니다.
- 고객은 자신이 이용할 자동차의 종류, 규격, 성능 등을 선정한 수 있으며,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자동차를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금융회사는 자동차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리스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금융회사에 있으며 고객의 사용·수익권을 가집니다.
- 고객은 제2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대한 하자가 없는 한 제8조에 따라 자동차의 인수 및 등록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자동차를 인도 받은 후 운행과 관련하여서는 제13조에 따른 각종 의무를 다하기로 합니다.
- 금융회사는 자동차가 회기의 소유임을 표시하는 등지를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리스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이 표지를 임의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제6조 (리스계약의 성립 및 실행)

- 리스계약은 고객의 청약과 금융회사의 승낙에 의해 성립합니다.
- 리스기간은 고객이 이 약정서에 따라 자동차를 리스하여 사용하는 기간(이하 "리스기간"이라고 합니다.)이며, 리스실행일은 고객 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 합니다.
- 금융회사는 자동차인수증(전자문서 포함), 녹취 중 고객과 합의한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고객이 자동차를 인수하였음을 확인함으로써 자동차를 인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제12조의 사유로 인하여 리스기간 도중에 당해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그 날부터 리스기간도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 고객은 계약체결 및 관련 증명서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제증명, 확인서 등의 소요비용
 - 리스계약 체결 관련 인체세의 50% 금액(금융회사가 나머지 50%금액 부담)

제7조 (리스료 및 기타(기)납금)

- 고객은 금융회사에게 약정서에 기재된 리스료 및 기타 자동차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합니다.제7항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의 가격인상, 정부정책 등으로 리스료가 변동된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변동된 리스료를 개별통지하며, 고객은 자동차 출고이전까지 리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자동차를 인수받은 후 자동차의 사용과 관련하여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 받을 경우,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이 이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관계기간에 이의신청을 통한 납부차 변경신청
 - 범칙금 등 부과 후 최초 도래하는 리스료 등에 별도 부과
 - 범칙금 등을 납부하도록 고객에게 즉시 통보

제8조 (자동차의 인수 및 등록)

- 고객은 자동차 인수 시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고객 또는 고객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 받은 즉시 자동차에 대한 하자유무를 검사하고 금융회사에 제26조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자동차인도 사실을 확인해주기로 합니다.
- 고객이 제항의 자동차출주 사실을 확인해준 경우 자동차를 인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금융회사는 보험계약 종료된 즉시 자동차를 금융회사의 명의로 등록하되, 금융회사가 동의할 경우 고객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에 소요되는 취득세 등 제비용은 금융회사가 납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고객의 고의·과실로 인한 사유로 취득세가 축소·지연 납부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 제비용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또한 고객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는 금융회사가 금융회사의 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며, 고객의 고의·과실로 인해 취득세가 지연 납부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 제비용과 고객 고의·과실로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 고객의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고객은 등록과 동시에 금융회사를 제1순위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며 설정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 고객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승낙 없이 당해 자동차를 인도, 대여 하는 등의 임의처분을하거나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리스 계약이 종료되어 고객이 자동차를 금융회사에게 반납하려다도 임의로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한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9조 (자동차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

- 고객은 자동차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매도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항의 경우 금융회사는 매도인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함으로써 매도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및 하자담보청구권 등 모든 권리를 고객에게 양도하기로 합니다.
- 고객은 제2조에 따라 자동차인수 사실을 확인해준 경우 이로써 자동차를 인수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달리 정당한 반증사유가 없는 한 약정서에 기재된 채무이행 책임을 집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자동차 인도지연 또는 하자 등을 알았거나 모르는데 과실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고객에게 리스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금융회사의 과실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인도지연 및 하자발생의 경우 고객은 제항에 따라 매도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 하기로 하며, 금융회사는 매도인의 과실이 확정된 날로부터 인도지연 또는 하자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고객에게 지급한 리스료를 정산하기로 합니다. 다만, 정산금액은 제세공과금, 보험료, 범칙금 등 금융회사가 지출한 비용으로서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10조 (소유권 및 권리의 양도)

- 고객은 제3기 자동차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전채권 또는 강제집행 등으로 금융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가 금융회사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즉시 그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 금융회사는 고객의 자동차 사용·수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계약상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채권양도 및 담보제공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1조 (리스보증금)

- 고객은 이 약정서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정서에 기재된 리스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이 계약 체결시에 금융회사에게 지급 또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리스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금융회사는 그 할인금액을 할 리스료에서 할인하여 고객에게 청구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리스보증금 납입시의 할인에상액 등 관련 조건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금융회사는 계약이 종료된 뒤거나, 고객이 약정서에 기재된 채무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고객에게 리스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합니다.
- 리스보증금은 고객이 연체한 리스료를 포함하여 이 계약과 관련된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금은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충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은 리스보증금을 이유로 금융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채무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선납금)

- 고객은 리스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게 리스실행전이나 리스기간 중 선납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지급한 선납금은 다음 각 호의 처리 방법을 설명하고 이 중에 고객과 금융회사가 합의한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합니다.
 - 리스실행일 이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자동차 구입가격에서 공제하여 리스료를 상환
 - 리스실행일 이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자동차 구입가격에서 공제하여 리스로 재산정(다만, 선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23조에서 정한 규정순해배상금액을 적용한 수수료로 징구할 수 있음)
 - 리스실행일 이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잔여리스차로 나누어 매월 리스료에 충당
 - 리스실행일 이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향후 도래할 리스료에 충당

제13조 (자동차의 유지비용 및 제세공과금)

- 고객은 자동차의 사용 관리에 관한 관련법령(자동차검사 포함), 감독관청 지청, 매도인의 지시 등을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 금융회사는 리스기간 중 언제든지 고객이 리스계약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으며 고객은 금융회사의 요청시 이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 자동차의 보관, 사용 등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는 한 고객이 책임을 지고 이를 배상하기로 합니다. 만약 금융회사가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고객은 자체 없이 금융회사에 동 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자동차의 구입, 인도, 유지, 사용, 등록말소, 폐차 등과 관련하여 고객이 부담하여야할 비용 중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과 제세공과금(과태료, 범과금 포함)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 리스실행일 이후 관계 법령의 개정, 제정, 기타 행정조치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유지, 사용 및 운행과 관련한 제세공과금의 증감사유 발생시 회사는 관련 비용을 정산하여 고객에게 청구 또는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14조 (금지행위)

고객은 금융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자동차의 양도, 전대 또는 약정서에 기재된 고객의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 자동차를 해당 자동차 보험계약에 인정하는 사용자 이외의 자에게 사용·도용 하는 행위
- 자동차의 규격, 성능, 기능 등을 변경하거나 무단으로 해체하는 행위
-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 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 제5조 제6항에 의거 자동차에 부착된 표지를 제거 또는 훼손하고 그 내용 및 부착위치 등을 변경하는 행위

제15조 (자동차의 도난, 멸실 및 훼손)

- 고객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로부터 리스계약 종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융회사에게 이를 반환할 때까지 도난, 멸실 또는 훼손 등과 같이 자동차의 정상적인 기능, 외형 및 정무를 손상시키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금융회사에 이를 통보하고 고객의 비용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한 가지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 자동차를 분해의 기능, 외형 및 정무를 복구합니다.
 - 지체 자동차의 도멸, 사망 및 구상이 동일한 자동차로 교체합니다. 이 경우 교체된 자동차는 금융회사의 소유가 되며, 이 약정서상의 자동차로 간주합니다.
- 제항의 자동차의 도난, 멸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금융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당 보험금을 최대 한도로 하여 제항에 따라 고객이 부담한 비용을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16조 (고객에 의한 보험관련)

- 고객은 직접 보험사를 선정하여 보상한다. 가입, 갱신, 사고처리 등 보험관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제항의 경우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금융회사를 필권자로 하여 자동차중립보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니다.제1항의 경우 자동차중립보험의 가입을 증명하는 영수증 또는 증권을 금융회사에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송부하기로 합니다.
-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 미가입(보험회사의 보험가입 및 갱신시의 미가입 포함) 또는 보험금 지급거절 등 사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금융회사에 발생한 손해는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17조 (금융회사에 의한 보험사외의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료 납부)

- 금융회사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고객 동의할 경우 금융회사와 고객이 협의한 보험사와 보험계약자를 금융회사로 하고, 미보험자를 고객으로 하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약정서에 기재된 할 보험료를 할리스료와 함께 매월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고객과 금융회사가 협의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방법 및 이와 관련한 리스료 납입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제항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금융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납부하며, 보험회사, 납부방법 및 절차 등은 약정서에 따르기로 합니다.
- 고객은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약정서에 기재된 할 보험료를 할리스료와 함께 매월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고객과 금융회사가 협의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방법 및 이와 관련한 리스료 납입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보험계약 갱신시에 고객이 고객과 협의한 보험사로 하여 고객의 동의를 받아 매월 자동차보험을 갱신합니다. 다만, 금융회사는 갱신시에 고객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전에 또는 리스계약시에 고객과 정한 바에 따라 갱신 전 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 할 수 있습니다.
- 제17조에 따라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서면통지 절차를 거쳐 임의보험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보험료 정산은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고, 부족분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청구하기로 합니다.
- 제17항에 따라 임의보험이 해지된 이후 고객이 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금융회사에게 자동차가 손해를 입힌 경우 고객은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니다.

제18조 (보험요율의 적용 및 변동)

- 제17조에 의한 보험에 가입할에 있어 고객에 따라 개인 또는 고객에 따라 개인에 대한 보험요율이 적용되며 고객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은 리스실행일에 확정됩니다. 이 때 적용되는 고객에게 보험요율도 별도 통보하기로 합니다.
- 보험계약 기간은 리스실행일로부터 년이며 매년 갱신되고, 고객과 사고경험 등에 따라 보험요율이 변경되는 경우 금융회사와 고객이 협의한 보험회사에 따라 변경될 경우 또는 합의 요율이 적용되며 고객은 이로 인하여 증감된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 보험료 적용 및 정산방법은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 기타 개별보험 보험요율의 적용 및 변동은 금융회사와 고객이 협의한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계약서 또는 보험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9조 (보험금의 수령)

- 보험금과 발생한 때에는 제16 및 제17조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받은 보험금 중 자동차의 손실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은 고객이 수령하기로 합니다.
- 제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시세하락에 따른 손해의 대가로 지급되는 격약순해금은 금융회사가 수령한 후 고객이 자동차를 매입할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며, 자동차를 반환할 경우에는 제26조에 의한 자동차까지 가가비용 청구시 격약순해금을 공제하기로 합니다.
- 고객은 보험회사와 발생하였을 때 즉시 그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지체 없이 금융회사에 제출하기로 합니다.
- 고객이 약정서에 보험금 청구위임 함속에 동의한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을 대신하여 해당 보험사에 자기자동차 손해에 대한 전손 및 추징 전손에 대한 보험금 청구 및 수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보험금 수령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서 또는 보험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20조 (보험사고의 처리)

-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령 및 보험계약상의 절차에 따라 사고를 처리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는 필요에 따라 고객 을 위해 보험사고 처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귀책사유로 리스기간에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험요율에 충당하지 못하거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고객은 그로 인하여 금융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니다.

- ③ 자동차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고객이 자신의 책임하에 결정하기로 합니다.

제21조 (계약의 중도해지)

- ① 고객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0일 전에 금융회사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②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통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고객에게 서면으로 발생 사유의 해소를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까지 고객이 발생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계약상에 규정된 자동차인수 및 자동차인수 사실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 2. 제14조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행한 경우
- 3. 제15조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 4. 고객의 귀책사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2회 이상 연체하는 등 보험관리를 해태한 경우
- ④ 고객이 월리소료를 2회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이 계약의 해지를 계약해지일 3영업일(고객이 가계인 경우, 7영업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일 3영업일(고객이 가계인 경우, 7영업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고객이 가계인 경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의 해지일로 합니다.
- ⑤ 리스기간 중 자동차가 도난 또는 전손된 경우, 보험금 수령일자에 리스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제22조 (중도해지에 따른 정산)

- ① 고객은 제21조에 따라 리스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동차의 처리방법에 따라 제23조에 의한 규정손해배상금 또는 제24조에 따른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을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규정손해배상금 및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의 부과 근거 및 관련 요율 등을 사전에 설명하기로 합니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규정손해배상금 및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의 부과 근거 및 관련 요율 등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또한, 고객은 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말소에 따른 제반수수료를 부담하며, 이외에 리스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로 합니다.
- ② 제항에 불구하고 고객의 과실 없이 자동차가 도난 또는 전손이 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고객이 이와 관련된 중도해지손해배상금 또는 규정손해배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③ 자동차가 도난 또는 전손에 대해 고객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고객이 제23조에 따른 규정손해배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 ④ 고객이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해지 최고기간 동안 금융회사의 자동차평가 정산업무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 ⑤ 고객은 계약 해지일 현재 미납된 리스로, 제항의 손해배상금 등 고객이 부담하기로 한 이 계약상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니다.
- ⑥ 고객은 계약의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미회수원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⑦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할 리스보증금에서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 ⑧ 금융회사는 해지예정일이 법정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해지예정일로부터 다음 영업일까지는 리스료 등을 부과하지 않기로 합니다.
- ⑨ 금융회사는 중도해지에 따른 정산내역을 고객에게 서면,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자동차의 처리 및 평가는 제25조 및 제26조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기로 합니다.

제23조 (규정손해배상금)

- ① 고객이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 규정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금융회사의 규정손해배상금은 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에 약정한 금융회사의 규정손해배상금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규정손해배상금과 미회수원금의 합계 금액은 최초 계약에 따른 잔여리스료와 잔존가치의 합계금액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 ③ 운용리스의 규정손해배상금은 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에 약정한 운용리스의 규정손해배상금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규정손해배상금과 미회수원금의 합계 금액은 최초 계약에 따른 잔여리스료와 잔존가치의 합계금액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규정손해배상금률은 리스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연 단위 또는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차등하여 인하는 방식으로 적용하며, 계약해지일 현재의 잔존일수가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차등하여 인하는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 ⑤ 규정손해배상금률은 금융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계약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24조 (중도해지손해배상금)

- ① 운용리스의 경우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을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운용리스의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에 약정한 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은 최초 계약에 따른 잔여리스료의 합계금액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 ③ 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은 리스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연 단위 또는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차등하여 인하는 방식으로 적용하며, 계약해지일 현재의 잔존일수가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차등하여 인하는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 ④ 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은 금융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계약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25조 (리스계약의 종료)

- ① 이 계약이 정상으로 되는 경우 자동차의 처리는 고객과 금융회사간의 계약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② 제21조에 따라 중도해지 되는 경우 리스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 ③ 고객이 리스기간 종료시 재리스를 선택하는 경우 계약체결 금액은 리스기간 종료시 자동차의 잔존가치로 합니다. 다만, 중고시세의 변동으로 인하여 추정잔존가치가 재리스 계약시점의 중고차 소매시세와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고객이 상호 협의 하에 결정된 금액으로 재리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니다.
- ④ 제3항의 경우 재리스 기간 및 그 기간 중의 리스료 등 재리스 조건에 관하여는 별도로 합의하기로 합니다.

제26조 (반환자동차의 평가)

- ① 고객이 이 계약에 의해 자동차를 반환하는 경우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대리인이 지정한 평가기관은 반환자동차의 상태 및 성능을 평가 한 후 고객에게 자동차평가표를 교부하며,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대비 감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그 금액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가 자동차 감가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보험수리력 등에)는 고객에게 이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가치감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치금액 =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 감가율의 합
- ② 고객이 제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고객의 상호협의하에 정한 별도의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결과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사전에 자동차의 감가율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근거 및 설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자동차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자동차의 반환을 거절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관련 보험금을 수령하여 잔여리스료와 관련 손해를 보상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자동차의 파손, 임의개조로 인하여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 2.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대리인에게 자동차의 하자 및 수리사실, 주행거리 등을 고의로 은폐·조작한 경우
- 3. 자동차의 침수, 전복, 화재, 절단 등 자동차상태가 수리 불가능한 경우
- 4. 제15조 제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5. 반환시점 자동차의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제27조 (초과운행부담금)

- ① 운용리스계약에서 고객이 금융회사와 계약한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금융회사는 아래 산식에 의한 초과운행 부담금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초과운행부담금 = 초과운행거리(Km) × Km당 초과운행료
- ② 제1항의 초과운행거리는 이 계약의 종료, 해제 또는 해지된 시점에서 금융회사가 확인한 주행거리와 계약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제28조 (자동차의 반환 또는 구매절차 불이행시 책임)

- 이 계약이 정상으로 되거나 제21조에 의한 사유로 중도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동차의 반환 또는 구매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는 제29조에 따른 금액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는 소정의 법적 절차에 의하여 고객으로부터 자동차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른 리스료 이외의 반환지연금을 받지 않습니다.
- 1. 반환일자에 대하여 금융회사와 사전 협의가 있는 경우
- 1.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불가항력, 사변, 재해, 은행 중 사고,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로 인하여 반환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었고 고객이 이를 합리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제29조 (지연배상금 및 반환지연금)

- ① 고객이 리스료 등 이 계약에 따라 금융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고객은 지급일 다음날부터 연체일까지 한면날기*로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총 금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율과 연체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지연배상금을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지급일 다음날 대금을 결제한 경우는 연체일수를 1일로 합니다. * 연체일수를 산정할 경우 지급일 다음날과 한제일 중 하루만 포함
- ② 제항의 지급일일은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무의 종류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는 계약 해지일이 지급일이 됩니다.
- ③ 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규정손해배상금 또는 중도해지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계약해지일 다음날부터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④ 고객은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어 고객에게 자동차 반환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지체한 경우, 고객은 금융회사에 반환기일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 한면날기로 산정한 경과일수에 대해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반환지연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반환기일 다음날 반환한 경우는 경과일수를 1일로 합니다. * 반환지연금 = [일리스료 × (일리스료 × 반환지연일수)] × 경과일수
- ⑤ 금융회사가 리스보증금 등 금전채무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제항의 지연배상금율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⑥ 제1항의 지급일 및 제항의 반환기일이 법정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을 해당일로 간주하기로 합니다.

제30조 (통지업무)

- ① 고객 또는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제91조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무역을 지체하여 금융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 1. 자동차에 대한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3자에 의한 소유권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 2.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때
- ② 금융회사는 리스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 만기도래 30일 전 고객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31조 (관련서류의 보완 등)

- ① 고객은 리스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리스계약 체결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금융회사가 제출된 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② 제출한 서류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 후 폐기되며,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즉시 폐기합니다. 다만, 고객이 사전에 반환 요청을 한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제32조 (승계)

- ① 고객이 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신규로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절차와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 ② 제항에 따라 고객이 제3자에게 승계하고자 할 경우, 금융회사는 심사비용 등 승계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에게 승계 수수료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③ 승계 수수료는 미회수원금에 금융회사와 고객이 계약한 승계수수료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④ 제3항의 승계수수료율은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리스계약의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인하는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승계 수수료 적용과 관련하여 승계업무 처리에 필요 비용을 감안한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을 약정서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자동차 금융리스 신청서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주) 귀중

년 월 일

| | | 공 통 필 수 기 재 사 항 | | | | | |
|-------------------------------------|--|---------------------------------------|--|-------|---------------------------------------|---|----------|
| | | ※ 아래 필수 기재사항 작성만으로도 금융상품 이용 계약이 가능합니다 | | | | | |
| □ 개 인 | 성 명 (사업자명) | (인)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 |
| | 자 택 주 소 (실거주지)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자 택 주 소 (주민등록지) | (-) | | | | | |
| | 이메일 주소 | @ | * 자동차세 및 과태료에 대한 상세정보(위반사실 통지서/납부 통지서)는 E-mail 로만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SMS 를 통한 간단한 정보 이외에 상세 정보의 수신을 원하실 경우, E-mail 주소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 | | |
| | 결 제 계 좌 | 은행 | 계 좌 번 호 | S M S | | * 월 리스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범칙금 등 납입 관련 정보를 SMS로 발송해드립니다. | |
| | 청구서 수령 | □ 우편(□ 직장 □ 자택) □ 이메일 □ 기타 () | | 결 제 일 | 매월 □ 5일 □ 10일 □ 15일 □ 20일 □ 25일 □ () | | |
| | 이 약정서 뒷면에있는 자동계좌이체 약관을 승인하고 위와같이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합니다. | | | | | | 예금주: (인) |
| □ 개 인 사 업 자 | ※ 아래의 정보 수집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적합한 구매권유(만 65세 이상인 자, 은퇴자, 주부 등에게 기한이익상실 등 상품설명 강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귀하가 아래의 정보 제공에 동의하시면 상품에 대한 불이익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하여 설명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대출 절차가 진행됨을 안내드립니다. | | | | | | |
| | □ 추가설명 원함(□ 65세 이상 고령층 □ 은퇴자 □ 주부 □ 기타) □ 추가설명 원치 않음 | | | | | | |
| | 실제 소유자 여부 | □ 예 □ 아니요 | | | | | |
| 상품별 필수 기재사항(개인 및 개인사업자만 작성) | | | | | | | |
| ※ 대출가능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로 수집하는 정보입니다. | | | | | | | |
| 직장(상호)명 | 부 서 명 | 직 위 | 재직(사업)기간 | 연소득 | 직종 | | |
| 직 장 주 소 (-) | | | | | | 직장전화번호 | |

| | | 공 통 필 수 기 재 사 항 | | | | | |
|---|---|---------------------------------------|--|-----------------|---------------------------------------|-------|---|
| | | ※ 아래 필수 기재사항 작성만으로도 금융상품 이용 계약이 가능합니다 | | | | | |
| □ 법 인 | 상 호 | (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성명 | | | |
| | 사업장 주소 | (-) | 전 화 번 호 | | | | |
| | 사업자등록 연월일 | 년 월 일 | 업 종 | 결 제 방 식 | □ 자동이체 □ 현금수납 | S M S | * 월 리스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범칙금 등 납입 관련 정보를 SMS로 발송해드립니다. |
| | 이메일 주소 | @ | * 자동차세 및 과태료에 대한 상세정보(위반사실 통지서/납부 통지서)는 E-mail 로만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SMS 를 통한 간단한 정보 이외에 상세 정보의 수신을 원하실 경우, E-mail 주소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 | | |
| | 결 제 계 좌 | 은행 | 계 좌 번 호 | (※ 본인명의 계좌에 한함) | | | |
| | 청구서 수령 | □ 우편(□ 직장 □ 자택) □ 이메일 □ 기타 () | | 결 제 일 | 매월 □ 5일 □ 10일 □ 15일 □ 20일 □ 25일 □ () | | |
| | 이 약정서 뒷면에있는 자동계좌이체 약관을 승인하고 위와같이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합니다. | | | | | | 예금주: (인) |
| 법 인 업 무 담 당 자 기 재 사 항 | | | | | | | |
|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확인을 위해 수집하는 정보입니다. | | | | | | | |
| 법인계약(업무) 담당자성명 | 부 서 명 | 전 화 번 호 | | | | | |
| 선 택 기 재 사 항 | | | | | | | |
| ※ 아래 선택 기재사항은 할부금융상품 이용계약 체결에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필요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1) 정확한 한도 및 금리산정 등을 위해 수집하는 정보입니다. (신용평점 가점요인으로 작용하며 한도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 | | | | | | |
| 고 용 형 태 | □ 정규 □ 계약 □ 파견 □ 기타 | 주택소유현황 | □ 자택(본인명의/배우자명의/가족명의) □ 전세 □ 월세 □ 기타() | 거주기간 | 년 | 개월 | |
| 주 택 유 형 | □ 아파트 □ 단독주택 □ 고급빌라 □ 연립/다세대/빌라 □ 오피스텔/원룸 | 세대주구분 | □ 본인 □ 가족 □ 단독 | | | | |
| 주 요 소 득 원 |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임대소득 □ 이자소득 □ 연금소득 □ 기타 | | | | | | |
| 2) 본인 결제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는 정보입니다. | | | | | | | |
| 은 행 명 | 은행 | 계 좌 번 호 | 예 금 주 명 | 신청인(본인) 과 의 관 계 | | | |
| 예금주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 예 금 주 전 화 번 호 | | | | |

| | | | | |
|---------|---|---|---------|-------------------------|
| 금 융 회 사 |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주)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10층 (남대문로5가, 서울스퀘어빌딩) 대표이사 프리츠 빌헬름 카버울 |  | 특 약 사 항 | (※ 공동채무계약의 경우, 분할비율 명기) |
|---------|---|---|---------|-------------------------|

| | | | | |
|---------------------------|---------|----|---------|----|
| 채무자겸 본인의 본인확인 및 자필서명을 확인함 | 판 매 직 원 | 서명 | 금융담당 직원 | 서명 |
|---------------------------|---------|----|---------|----|

자동이체 출금 동의서 / 계좌 변경 신청서

| | | | |
|---------------------------------|---|------------------|--|
| 계약자명 | | 계약 번호 | |
| 예금주 | * 예금주 도장 및 서명 (인) |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 |
| 계약자와의 관계 |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본인 외 () | 신청 사유 | |
| 지정 출금계좌 은행 | | 계좌 번호 | |
|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주) 사업자등록번호 | | 220 - 86 - 47637 | |

[자동이체약관] 금융감독원 약관신고 수리일자 : 2019.10.07

- 신청인 및 예금주(이하 "고객"이라 합니다.)는 약정된 납부일을 기준으로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지정하는 계좌이체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회사가 청구하는 금액을 자동이체 계좌로 신청한 은행 및 잔고보유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합니다.) 계좌(이하 "지정계좌"라 합니다.)에서 출금하여 납부할 것을 확인합니다.
- 자동납부를 위하여 지정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 청구서나 수표없이 자동계좌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처리 되며, 금융기관의 출금마감시간 내에 입금된 금액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이체일 현재 회사의 청구금액보다 부족 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 리스의 경우, 고객은 리스약관 상 제세공과금의 리스이용자 부담 의무에 따라 계약기간만료 이전 또는 소유권 미이전 시점에서 발생한 제세공과금(자동차세,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납부를 위하여 리스계약기간 내의 자동계좌이체일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특정 일자에 제세공과금을 지정계좌에서 출금하는 데 동의합니다.
- 이체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계좌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 고객과 해당 계좌개설금융기관이 약정한 출금 우선순위에 따르겠습니다.
- 자동이체 일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이런 경우 사전에 고객에게 통지하며, 자동이체일 변경으로 인해 고객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납부자의 사정으로 예금계좌를 변경하거나 자동납부신청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소정의 양식에 의한 자동납부(해지)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할 것이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자동납부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회사의 청구대로 출금하되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합니다.
-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기관의 자동이체납부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상위와 같이 자동이체 출금(변경)을 신청하며, 아래 자동계좌이체약관의 내용을 인지하였습니다.

| | | | | | |
|-------------|---|---|---|------------------|-----|
| 신 청 인 (계약자) | 년 | 월 | 일 | * 계약자 본인 도장 및 서명 | (인) |
| | | | | 신 청 인 (계약자) : | |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다음 금융거래정보(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출금이체 신규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신청할 때까지 상기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 | | | | | |
|-------------|---|---|---|---------------|-----|
| 신 청 인 (예금주) | 년 | 월 | 일 | * 예금주 도장 및 서명 | (인) |
| | | | | 신 청 인 (예금주) : | |



개인(신용)정보 필수 요약동의서

본 동의서는 요약동의서이며 요청하면 전체 동의서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청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①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귀하는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조회 및 제공 동의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조회 및 제공에 관한 동의는 상거래관계의 설정, 유지에 필수적이거나, 상거래관계에 따라 귀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적 사항이므로, 아래의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 |
|-----------|---|
| 수집·이용 목적 | 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신청 상품 서비스 제공, 법령상 의무이행, 신용질서 문란 행위 조사, 분쟁처리, 전화상담 업무, 민원처리, 본인 여부 확인 |
| 보유 및 이용기간 |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 (단,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위 보유 기간에서의 거래 종료일이란 “회원탈퇴 또는 채권·채무 관계가 소멸된 날”을 말한다. |

| 수집·이용 항목

| | | | | | |
|----------|--|------------|-------------|--------------|--------------|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
| |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본인)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보증인)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 | | | |
| 개인(신용)정보 | 일반개인정보(24개) | 신용거래정보(3개) | 신용도판단정보(2개) | 신용능력정보(5개) | 공공정보(7개) |
| | 성명, 휴대폰 연락처 등 | 여신성거래정보 등 | 신용질서 문란정보 등 | 직업정보, 소득정보 등 | 인적정보, 체납정보 등 |
| |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본인)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보증인)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 | | | |

② 조회에 관한 사항

| | |
|-------------|--|
| 조회 대상 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나이스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한국기업데이터(주) |
| 조회 목적 | 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통계분석 및 정책판단의 자료 활용, 충당금 산출, 신용 관련 모형 개발 및 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 |
|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 당사의 조회 결과 귀하와의 (금융)거래가 개시되는 경우 해당 (금융)거래종료일까지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당사의 조회 결과 귀하가 신청한 (금융)거래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단, 현재 거래가 유효한 고객의 경우 새로운 거래가 거절된 경우에도 거래 거절 건에 대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

| 조회 항목

| | | | | | |
|----------|---|------------|-------------|--------------|--------------|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
| | 위 고유식별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본인)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보증인)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 | | | |
| 개인(신용)정보 | 일반개인정보(17개) | 신용거래정보(3개) | 신용도판단정보(3개) | 신용능력정보(5개) | 공공정보(7개) |
| | 성명, 휴대폰 연락처 등 | 여신성거래정보 등 | 신용질서 문란정보 등 | 직업정보, 소득정보 등 | 인적정보, 체납정보 등 |
| | 위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본인)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보증인)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 | | | |

③ 제공에 관한 사항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회사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 | |
|-------------|--|
| 제공받는 자 | 한국신용정보원, 나이스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 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을 위한 신용조회업무 수행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법령에서 정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수행 본인의 신용 판단 및 본인확인 등 법령에서 정한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수행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에 따른 업무 수행 |
|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약에 근거한 기간까지 |
|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하는 아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는 상거래관계의 설정, 유지에 필수적이거나, 상거래관계에 따라 귀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적 사항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제공 항목

| | | | | | |
|------------------------------|---|------------------------------|----------------------------|----------------------------|----------------------------|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
| |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본인)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보증인)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 | | | |
| 개인(신용)정보 | <table border="1"> <tr> <td>일반개인정보(16개) 성명, 휴대폰 연락처 등</td> <td>신용거래정보(3개) 여신성거래정보 등</td> <td>신용도판단정보(2개) 신용질서 문란정보 등</td> <td>신용능력정보(5개) 직업정보, 소득정보 등</td> </tr> </table> | 일반개인정보(16개) 성명, 휴대폰 연락처 등 | 신용거래정보(3개) 여신성거래정보 등 | 신용도판단정보(2개) 신용질서 문란정보 등 | 신용능력정보(5개) 직업정보, 소득정보 등 |
| 일반개인정보(16개) 성명, 휴대폰 연락처 등 | 신용거래정보(3개) 여신성거래정보 등 | 신용도판단정보(2개) 신용질서 문란정보 등 | 신용능력정보(5개) 직업정보, 소득정보 등 | | |
| |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본인)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보증인)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 | | | |

(2) 여신금융협회 등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 | |
|-------------|---|
| 제공받는 자 | 여신금융협회, 국세청, 관세청, 행정안전부, 건강보험공단 |
|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의무 이행 |
| 보유 및 이용기간 | 본 기관이 준수하여야하는 관련 법령의 보존기간을 따름 |

제공 항목

| | | | | |
|-----------------------------|---|-----------------------------|-------------------------|-----------------------------|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 |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본인)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보증인)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 | | |
| 개인(신용)정보 | <table border="1"> <tr> <td>일반개인정보(6개) 성명, 휴대폰 연락처 등</td> <td>신용거래정보(3개) 여신성거래정보 등</td> <td>신용도판단정보(7개) 직업정보, 소득정보 등</td> </tr> </table> | 일반개인정보(6개) 성명, 휴대폰 연락처 등 | 신용거래정보(3개) 여신성거래정보 등 | 신용도판단정보(7개) 직업정보, 소득정보 등 |
| 일반개인정보(6개) 성명, 휴대폰 연락처 등 | 신용거래정보(3개) 여신성거래정보 등 | 신용도판단정보(7개) 직업정보, 소득정보 등 | | |
| |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본인)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보증인)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 | | |

(3) 계열사 등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 | |
|-------------|--|
| 제공받는 자 | Mercedes-Benz Group AG(독일), Mercedes-Benz Mobility AG(독일) |
|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 실적분석·보고 및 감사, 위험관리 본사보고 및 기간별 결산 |
|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 목적 달성시까지 |
|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하는 아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는 상거래관계의 설정, 유지에 필수적이거나, 상거래관계에 따라 귀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적 사항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제공 항목

| | | | | | | |
|----------------------|--|---|-------------|-----------|----------|--|
| 개인(신용)정보 | <table border="1"> <tr> <td>일반개인정보(11개)</td> <td>신용거래정보(25개)</td> </tr> <tr> <td>성명, 차량번호등</td> <td>개인신용평점 등</td> </tr> </table> | 일반개인정보(11개) | 신용거래정보(25개) | 성명, 차량번호등 | 개인신용평점 등 | |
| | 일반개인정보(11개) | 신용거래정보(25개) | | | | |
| 성명, 차량번호등 | 개인신용평점 등 | | | | | |
|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본인)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보증인)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 | | | |

(4) 자동차 판매사,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 | |
|-------------|--|
| 제공받는 자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경남자동차판매(주), 교학모터스(주), 더클래스호성(주), (주)모터원, 스타자동차(주), 신성자동차(주), 중앙모터스(주), 진모터스(주), 케이씨씨오토(주), 한성모터스(주), 한성자동차(주)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등록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
|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 공동마케팅/프로모션 비용 정산, 위탁업무 수수료 등 정산 |
|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 목적 달성시까지 |
|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하는 아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는 상거래관계의 설정, 유지에 필수적이거나, 상거래관계에 따라 귀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적 사항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제공 항목

| | | | | | | |
|----------------------|--|---|------------|---------------|--------------|--|
| 개인(신용)정보 | <table border="1"> <tr> <td>일반개인정보(3개)</td> <td>신용거래정보(3개)</td> </tr> <tr> <td>차량 번호, 차대번호 등</td> <td>거래기간, 대출금액 등</td> </tr> </table> | 일반개인정보(3개) | 신용거래정보(3개) | 차량 번호, 차대번호 등 | 거래기간, 대출금액 등 | |
| | 일반개인정보(3개) | 신용거래정보(3개) | | | | |
| 차량 번호, 차대번호 등 | 거래기간, 대출금액 등 | | | | | |
|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본인)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보증인)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 | | | |

(5) 단체보험 보험사에 제공(단체보험 또는 부가서비스 제공 금융상품에 가입 시 필수)

| | |
|-------------|--|
| 제공받는 자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DB손해보험(주), 현대해상화재보험(주) |
|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 단체보험 가입, 부가서비스 관련 기업보험 목적물 정보 제공 |
|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 및 규약 등에 근거한 기간까지 |
|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하는 아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는 상거래관계의 설정, 유지에 필수적이거나, 상거래관계에 따라 귀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적 사항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제공 항목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단체보험 가입시에 해당) | | | | | | |
|-----------|--|--|------------|-----------|-------------------|--|--|
| |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본인) <input type="checkbox"/>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동의함 (보증인) <input type="checkbox"/>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동의함 | | | | | | |
| 개인(신용)정보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style="width: 50%;">일반개인정보(6개)</th> <th style="width: 50%;">신용거래정보(7개)</th> </tr> <tr> <td>성명, 연락처 등</td> <td>금융계약번호, 금융계약시작일 등</td> </tr> </table> | 일반개인정보(6개) | 신용거래정보(7개) | 성명, 연락처 등 | 금융계약번호, 금융계약시작일 등 | | |
| | 일반개인정보(6개) | 신용거래정보(7개) | | | | | |
| 성명, 연락처 등 | 금융계약번호, 금융계약시작일 등 | | | | | | |
| | |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본인) <input type="checkbox"/>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동의함 (보증인) <input type="checkbox"/>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동의함 | | | | | |

본인 년 월 일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연대보증인 년 월 일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 신용도 등의 평가목적 외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의 경우 당사 홈페이지(<https://benzfs.com>) 및 고객센터(대표번호: 1577-2320)를 통해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귀중



개인(신용)정보 선택 요약동의서

본 동의서는 요약동의서이며 요청하면 전체 동의서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청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1) 금융상품 안내 및 이용권유를 위한 수집·이용

①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안심 다소안심 보통 신중 주의

※ 위 등급은 사생활 침해 위험, 혜택,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내용의 평가등급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자세한 사항 QR코드 참조)

| | |
|-------------|---|
| 수집·이용 목적 | 경품지급, 사은행사, 판촉행사, 고객의 편의 제공, 시장조사 및 상품·서비스 연구개발, 귀사의 금융상품·서비스 및 제휴사의 자동차 상품·서비스 안내 및 이용권유 및 연락 |
| 보유 및 이용기간 | 거래 종료일까지 위 보유 기간에서의 (금융) 거래 종료일이란 회원탈퇴 또는 채권·채무 관계가 소멸된 날을 말한다. |
|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하는 아래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금융상품과 관련된 신상품(서비스)소개, 편의 제공(경품, 사은품, 특판금리 등), 안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당사와의 금융 계약이 있으신 경우, 본 동의서의 동의 여부가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

수집·이용 항목

| | | |
|----------|--|------------------------------|
| 개인(신용)정보 | 일반개인정보(14개) 성명, 이메일 등 | 신용거래정보(6개) 대출 정보, 보증 정보 등 |
| |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다소안심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 |

상품서비스 안내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광고성 정보의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문자

이메일

전화

DM

※ 금융상품 안내 및 이용권유에 동의하셨더라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 권유 목적의 연락에 대한 중단을 언제라도 당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 1577-2320 / 홈페이지 : <https://benzfs.com>)

(2) 자동차 금융상품의 대상이 되는 차량의 위치 정보 수집·이용

① 수집·이용 목적에 관한 사항

안심 다소안심 보통 신중 주의

※ 위 등급은 사생활 침해 위험, 혜택,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내용의 평가등급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자세한 사항 QR코드 참조)

● 위치정보 수집장치 부착에 관한 고지

귀하가 자동차 금융상품(할부 및 리스 등)을 통해 사용하게 되는 차량에는 위치정보 수집 장치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위치정보는 해당 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하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식회사(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습니다.

| | |
|-------------|--|
| 수집·이용 목적 | 당사가 제공하는 자동차 금융상품(할부 및 리스 등)의 대상이 되는 차량의 반납 거부, 관련 채무 불이행, 횡령,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해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당한 이익과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차량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여 차량의 점유를 회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계약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Skip Loss" 기능이라고 합니다. |
| 보유 및 이용기간 | 차량의 점유 회복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 점유 회복시까지 (자동차 금융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대상 차량의 점유를 회복해야 할 필요가 존재한다면 그러한 목적이 달성되는 시점까지 보유·이용합니다.) |
|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하는 아래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차량의 도난, 분실 시 차량의 점유를 회복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

수집·이용 항목

| | | |
|----------|--|---|
| 개인(신용)정보 | 일반개인정보(8개) 자동차 금융상품의 대상이 되는 차량의 차량번호, 위치정보 등 | 신용능력정보(1개) 자동차 금융상품의 대상이 되는 차량의 차대번호 |
| |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심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 |

myService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주)(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my Service(https://mymbfs.co.kr)"(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myService"라 함은 "회사"가 "회사"와 할부 또는 리스(금융리스, 운용리스)등 금융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은 고객을 대상으로 "회원"의 금융계약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를 말합니다. 이하 본 약관에서 "서비스"라고 하면 특별히 달리 표시하지 않은 이상 "myService"를 말합니다.
- "회원"이라 함은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아이디(ID)를 부여받은 "이용자"로서 "회사"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으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으로서, 회원이 지정한 고유 e-mail 주소를 말합니다.
-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개정)

- 본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公示하고, 이에 동의한 회원이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본 약관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한민국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예정일 및 게시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 초기화면에 그 적용예정일 7일 전부터 게시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하는 것 외에 이메일 발송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별도로 통지합니다.
- 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회사의 전향 단서에 따른 약관의 불리한 변경에 대하여 적용예정일까지 회사에게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2장 회원가입

제4조 (회원가입)

- "회사"가 "회원"과 할부 또는 리스(금융리스, 운용리스) 등 금융서비스 이용계약을 맺은 고객이 본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회원가입 신청을 한 후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 "회사"와 금융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됩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실명이나 기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된 제반 사항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경우
-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제4항과 제4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회사"는 이를 신청자에게 알리지 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5조 (회원정보의변경)

-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릴 수 있습니다.
- 제2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됩니다.
-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7조 ("회원"에 대한 통지)

-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아이디로 지정한 email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회사"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항의 통지를 합니다.
- "회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서비스 중단 예정사실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사전,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30일 전에 안내하기로 합니다. 사후 고지할 경우에는 즉시 하도록 합니다.

제8조 (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등)

-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가입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다른 사람의 "회사"의 서비스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회사"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경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회사"가 회원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 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3장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9조 (서비스의 내용)

- "회사"가 "myService"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정보의 제공 : 차중, 차감번호, 계약번호, 금융상품정보 등
 - 납입내역, 상환일정 등의 조회
 - 영수증 출력
 - 기타 문의사항, 고객상담 등

- "회사"는 "회원"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즉시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제10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을公示하고 준수합니다.
-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기재
 - 타인의 정보도용
 - "회사"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 "회사"가 금지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공공질서에 반하는 정보를 "회사"의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 "회사"는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7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기준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하거나 게시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하거나 게시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상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회원"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의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 시간은 서비스 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 사업중단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7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회원"에게 보상을 합니다.

제13조 (콘텐츠서비스의 변경)

-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 7일 이상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제항에 의한 서비스의 변경 및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합니다.

제14조 (저작권 등의 귀속)

-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제휴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해당 제공업체에 귀속됩니다.
-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 또는 제공업체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5조 (개인정보보호)

-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가 문외의 사항에 관해 "이용자"는 진실한 내용을 성실하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 "회사"가 "회원"의 개인정보가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이용신청 등에서 제공한 정보와 제항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를 당해 "회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회사"가 제항과 제3항에 의해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내용, 정보의 수집 목적 및 이용 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고지하여야 합니다.
- "회원"은 언제든지 제3항의 동의를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회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회사"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회원"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16조 (면책조항)

-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7조 (분쟁의해결)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회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 분 조 제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회사"와 이용자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년 일 일

myService 가입동의서

* myService는 연체 어디서든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의 고객서비스를 스마트하게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서비스입니다. (myService 는 https://mymbfs.co.kr 또는 모바일앱 "myMBFS"를 통해, 나의 계약정보 및 납입내역 확인, 금융상품 및 각종 프로모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아래의 E-mail 주소를 이용하여 myService에 가입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본인
성명

(인)

E-mail
주소

@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여신금융협회 약관신고 수리일자: 2019.07.31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재(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금융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재(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3.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전자금융보조입자"라 함은 금융회사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계좌시스템의 운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승인 및 결제 그 밖의 자금 정산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 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의 자금인출업무, 환업무 및 그 밖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 다.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라, 가목부터 다목의 사업자와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인(이하 "외부주인"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
5. "전자적 장치"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인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공인인증서
 - 다.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7.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지급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8. "전자지급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9.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채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용자와 가맹점 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서 발행한 증표(자금을 용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제외합니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12.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합니다.
 - 가. 금융회사 외의 제3자로부터 채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 나. 구입할 수 있는 채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13. "가맹점"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4.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5. "추심이체"라 함은 수취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추심지시에 따라 금융회사가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다른 금융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16. "영업일"이라 함은 금융회사의 영업장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적용되는 거래)

이 약관은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됩니다.

1.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인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2. 컴퓨터에 의한 거래
3. 전화기에 의한 거래
4.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거래

제4조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 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회사와 별도의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0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결제대금, 승인내역 등 단순조회
 2.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인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 ② 전자금융거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권을 가진 자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 등에 의하여 금융회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5조 (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 ① 금융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확인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얻은 경우
3.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로부터 1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제6조 (접근매체의 관리)

-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 방치하는 행위

제7조 (이용시간)

- ①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금융회사는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을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립니다.

제8조 (수수료)

- 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금융회사는 수수료(율)를 고객에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 및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율)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5조를 준용합니다.

제9조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 ① 금융회사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금융회사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공인전자서명 또는 금융회사가 정한 기타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이나 전화녹취(ARS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출금신청을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이나 전화녹취(ARS를 포함한다)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동의의 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방법
-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출금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거래의 경우에는 지급인은 출금일 전영업일까지 금융회사에 출금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거래의 제한)

- ① 금융회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서비스 중단 예정사실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30일 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금융회사는 사전 안내 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즉시 안내해야 합니다.
 1. 긴급한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2. 통신장애, 정전 등이 발생한 경우
 3. 서비스 이용 급증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해킹 등으로 금융회사 또는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공인인증서가 취소된 경우
 6.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거부한 경우
 7. 기타 이용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 ③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및 통신장애 등으로 거래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배상하기로 합니다.

제11조 (전자지급거래의 효력)

- 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합니다.
 1. 전자지급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2.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 수취인이 현금을 받은 때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 ②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2조 (거래지시의 철회 및 제한)

- ① 이용자는 제1조에 의하여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또는 금융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 ②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는 이체일 전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 ③ 실시간 이체되는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성질상 금융회사가 거래의 완료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④ 이용자의 사망·파산(후견선고)·피한정후견선고·피특정후견선고나 이용자 또는 금융회사의 해산·합병·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금융회사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13조 (오류의 정정 등)

-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금융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③ 금융회사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4조 (사고시의 처리)

- ① 이용자는 접근매체의 도난·분실·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 등에서의 사고 및 해킹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금융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신고는 금융회사가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며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금융회사에 서면, 전화 등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③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서면, 전화 등으로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손해배상 및 면책)

- ① 금융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②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3. 금융회사가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또는 이용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과 관련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는 등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 ⑤ 금융회사는 이 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6조 (전자금융보조업자 등의 지위)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 및 제2조 제4호 라목에 따른 제휴업체 등의 고의나 과실은 금융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제17조 (거래기록의 보존)

- 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초회거래는 제외한다.)을 5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 가.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 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다.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라. 금융회사가 수취한 전자금융 관련 수수료
 - 마. 추심이체의 경우 이용자의 출금동의 내역
 - 바.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사.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 아.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②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을 1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 가.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나.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다.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제18조 (거래기록 및 자료의 제공)

- ①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14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자가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 및 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하며 제공 방법은 금융회사와 이용자 간 협의하여 정한다.
- ③ 금융회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 및 자료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한다.
 - 1.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 2.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14일 이내

제19조 (통지방법 및 효력)

- 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② 금융회사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거래의 처리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며, 이용자가 제20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20조 (신고사항의 변경 등)

- ① 이용자가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비밀번호, 상호, 전화번호 등 금융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금융회사가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신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
- ③ 이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신고사항 외의 각종 통지를 금융회사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한 통지는 금융회사에 한 것으로 봅니다.

제21조 (거래내용 녹음)

- ① 금융회사는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 ②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금융회사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22조 (비밀보장의무 등)

- ① 금융회사는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 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② 금융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시에는 금융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 ③ 금융회사는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경우 외에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를 게시 또는 전송하거나 이용자의 휴대폰 및 컴퓨터 등 개인기기의 식별정보(예 : serial, Mac address, UUID 등)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23조 (약관의 명시·교부·설명)

- ①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② 금융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제24조 (금융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25조 (약관의 변경)

- ① 금융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금융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6조 (약관적용의 우선순위)

- ①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선불카드 표준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 등 관련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27조 (이의제기 및 협조)

-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금융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금융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③ 금융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④ 이용자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28조 (재판관할)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9조 (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자동차 매매 · 발주계약서

| | | |
|---------------------|---|---|
| 발 주 자 (갑) |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주)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10층 (남대문로5가, 서울스퀘어빌딩) 대표이사 프리츠 빌헬름 카바움 |  |
| 수 주 자 (을) | | (인) |
| 연대보증인 겸 리스이용자(병) | | (인) |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주)(이하 "갑"이라 한다)와 _____ (이하 "병"이라 한다)간의 자동차 리스약정서에 따라 갑, 수주자(이하 "을"이라 한다)및 병간에 다음과 같이 차량 매매 · 발주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 별 표 -

| | 차 종 | 색 상 | 대 수 | 특이사항 | 비 고 |
|-------------|-------------------------------------|-----|-----|------|-----|
| (1) 발 주 물 건 | | | | | |
| (2) 발 주 금 액 | | | | | |
| (3) 입 금 계 좌 | _____은행 계좌번호 : _____ 예금주 : _____ | | | | |
| (4) 인 도 장 소 | | | | | |
| (5) 인 도 기 한 | _____년 _____월 _____일 까지 | | | | |
| (6) 특 약 사 항 | | | | | |

제 1 조 계약물건의 표시 및 발주금액

을은 별표(1)란의 기재 차량을 별표(2)란의 발주금액으로 하여 병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제 2 조 발주금액의 지급 방법

을이 차량을 별표(4)란의 장소에서 병에게 인도한 후 을은 인도사실을 갑에게 통지하고 갑은 지체없이 별표(3)기재 을의 거래은행 계좌로 별표(2)란의 발주금액을 입금키로 한다. 을의 인도사실 통지는 병이 발급한 차량인수증이 갑에게 도달하는 것으로 같음한다.

제 3조 물건의 인도 기한

- 1.을은 별표(5)란의 기재 기일 안에 차량을 별표(4)란 기재 장소에서 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2.차량의 인도기한 및 인도장소는 을과 병간의 별도 약정에 의거 정하는 것으로서 갑은 기한내, 지정 장소 인도 등에 대한 책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 4조 물건의 인수

차량인수(성능보전을 위한 시운전 포함)는 을 및 병의 책임하에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차량의 인수가 끝나는 즉시 병은 갑이 정하는 차량인수증을 갑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 5조 물건의 하자담보 등

별표(1) 기재의 차량은 갑과 병간의 리스계약에 의거 병의 책임하에 병이 선정한 것이므로, 차량에 관한 하자 담보, 기한내 보증, 보수, A/S 및 기타 을의 편익제공 의무 이행에 대해서는 을이 병에게 직접 그 책임을 지기로 하며 갑은 일체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6조 경비의 부담

본 계약의 체결에 따라 자동차의 매매 및 인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대경비 중 리스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운송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는 않는다)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본 계약 체결 후 관계법령의 변경에 의한 공과금의 증액, 운임, 기타 제 요인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는 모두 을이 부담하고 발주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을과 병의 합의에 의하여 그 일부를 병의 부담으로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병은 갑에 대하여 취득원가의 증액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7조 사고 책임

자동차를 병에게 인도할 때까지 자동차의 운반, 시운전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을이 모두 부담하기로 한다.

제 8조 계약의 철회

- 1.을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병이 이 계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차량을 인수·인도하기 전에는 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단, 차량이 등록된 이후에는 을은 인수·인도 전임을 이유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또한, 차량인수증이 갑에게 발급된 경우에는 차량의 인수 및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같음한다.
- 2.병이 차량을 인도받고 갑이 을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을과 병간의 별도약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 계약에 관한 청약이 철회된 경우 을은 갑에게 갑으로부터 받은 대금과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이 계약 체결일 현재 회사채 유통수익율에 의한 일할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즉시 반환키로 한다.
- 3.병의 귀책사유로 이 계약에 관한 청약이 철회되는 경우 을이 입은 손해는 병이 배상키로 하며 갑은 을, 병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 4.차량의 인도·인수 전 및 동 차량의 등록전 을 또는 병에게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갑은 이 계약을 통보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① 이 주문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 ②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되어 은행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을 때
 - ③ 영업을 휴·폐업되거나 회사가 해산된 때
 - ④ 파산, 회의를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이 있거나 기타 영업을 계속하곤 곤란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⑤ 다른 채무로 인하여 을에 강제집행, 보전처분, 체납처분의 절차가 개시 되었을 때

제 9조 물건의 소유권

차량의 소유권은 병이 갑에게 물건수령증을 발급하고 갑이 별표(2) 기재 대금전액을 을에게 지급한 때 등록명의로 상관없이 리스계약에 의거 그 소유권이 갑에게 있음 을 및 병은 각각 확인한다.

제 10조 계약의 해석

이 계약조건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는 갑과 을, 병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관계법령과 일반금융관행에 따른다.

제 11조 특약사항

별표(6)란의 특약사항은 이 계약과 일체가 되어 이 매매발주계약을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 12조 합의관할

본 계약에 관하여 갑과 을, 병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을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을이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자동차 매매 · 발주계약서

| | | |
|---------------------|---|---|
| 발 주 자 (갑) |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주)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10층 (남대문로5가, 서울스퀘어빌딩) 대표이사 프리츠 빌헬름 카바움 |  |
| 수 주 자 (을) | | (인) |
| 연대보증인 겸 리스이용자(병) | | (인) |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주)(이하 "갑"이라 한다)와 _____ (이하 "병"이라 한다)간의 자동차 리스약정서에 따라 갑, 수주자(이하 "을"이라 한다)및 병간에 다음과 같이 차량 매매 · 발주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 별 표 -

| | 차 종 | 색 상 | 대 수 | 특이사항 | 비 고 |
|-------------|-------------------------------------|-----|-----|------|-----|
| (1) 발 주 물 건 | | | | | |
| (2) 발 주 금 액 | | | | | |
| (3) 입 금 계 좌 | _____은행 계좌번호 : _____ 예금주 : _____ | | | | |
| (4) 인 도 장 소 | | | | | |
| (5) 인 도 기 한 | _____년 _____월 _____일 까지 | | | | |
| (6) 특 약 사 항 | | | | | |

제 1 조 계약물건의 표시 및 발주금액

을은 별표(1)란의 기재 차량을 별표(2)란의 발주금액으로 하여 병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제 2 조 발주금액의 지급 방법

을이 차량을 별표(4)란의 장소에서 병에게 인도한 후 을은 인도사실을 갑에게 통지하고 갑은 지체없이 별표(3)기재 을의 거래은행 계좌로 별표(2)란의 발주금액을 입금키로 한다. 을의 인도사실 통지는 병이 발급한 차량인수증이 갑에게 도달하는 것으로 같음한다.

제 3조 물건의 인도 기한

- 1.을은 별표(5)란의 기재 기일 안에 차량을 별표(4)란 기재 장소에서 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2.차량의 인도기한 및 인도장소는 을과 병간의 별도 약정에 의거 정하는 것으로서 갑은 기한내, 지정 장소 인도 등에 대한 책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 4조 물건의 인수

차량인수(성능보전을 위한 시운전 포함)는 을 및 병의 책임하에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차량의 인수가 끝나는 즉시 병은 갑이 정하는 차량인수증을 갑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 5조 물건의 하자담보 등

별표(1) 기재의 차량은 갑과 병간의 리스계약에 의거 병의 책임하에 병이 선정한 것이므로, 차량에 관한 하자 담보, 기한내 보증, 보수, A/S 및 기타 을의 편익제공 의무 이행에 대해서는 을이 병에게 직접 그 책임을 지기로 하며 갑은 일체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6조 경비의 부담

본 계약의 체결에 따라 자동차의 매매 및 인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대경비 중 리스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운송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는 않는다)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본 계약 체결 후 관계법령의 변경에 의한 공과금의 증액, 운임, 기타 제 요인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는 모두 을이 부담하고 발주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을과 병의 합의에 의하여 그 일부를 병의 부담으로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병은 갑에 대하여 취득원가의 증액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7조 사고 책임

자동차를 병에게 인도할 때까지 자동차의 운반, 시운전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을이 모두 부담하기로 한다.

제 8조 계약의 철회

- 1.을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병이 이 계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차량을 인수·인도하기 전에는 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단, 차량이 등록된 이후에는 을은 인수·인도 전임을 이유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또한, 차량인수증이 갑에게 발급된 경우에는 차량의 인수 및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같음한다.
- 2.병이 차량을 인도받고 갑이 을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을과 병간의 별도약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 계약에 관한 청약이 철회된 경우 을은 갑에게 갑으로부터 받은 대금과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이 계약 체결일 현재 회사채 유통수익율에 의한 일할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즉시 반환키로 한다.
- 3.병의 귀책사유로 이 계약에 관한 청약이 철회되는 경우 을이 입은 손해는 병이 배상키로 하며 갑은 을, 병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 4.차량의 인도·인수 전 및 동 차량의 등록전 을 또는 병에게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갑은 이 계약을 통보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① 이 주문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 ②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되어 은행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을 때
 - ③ 영업을 휴·폐업되거나 회사가 해산된 때
 - ④ 파산, 회의를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이 있거나 기타 영업을 계속하곤 곤란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⑤ 다른 채무로 인하여 을에 강제집행, 보전처분, 체납처분의 절차가 개시 되었을 때

제 9조 물건의 소유권

차량의 소유권은 병이 갑에게 물건수령증을 발급하고 갑이 별표(2) 기재 대금전액을 을에게 지급한 때 등록명의로 상관없이 리스계약에 의거 그 소유권이 갑에게 있음 을 및 병은 각각 확인한다.

제 10조 계약의 해석

이 계약조건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는 갑과 을, 병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관계법령과 일반금융관행에 따른다.

제 11조 특약사항

별표(6)란의 특약사항은 이 계약과 일체가 되어 이 매매발주계약을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 12조 합의관할

본 계약에 관하여 갑과 을, 병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을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을이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여신거래기본약관

여신금융협회 사후보고 접수일자 : 2021.11.02

이 여신금융회사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거래처(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금융회사는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적용범위)

- 이 약관은 금융회사와 채무자(리스이용자·할부금융이용자·차주·할인 신청인·지급보증신청인 등 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이의 사실 대(리스), 할부 금융, 대출, 팩드론, 어음할인, 지급보증, 외국환, 기타의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 이 약관은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수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금융회사가 제3자와의 여신에 관한 거래에서 취득한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됩니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12조,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약관은 금융회사의 본·지점과 채무자(기업)의 경우 본·지점 포함)의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거래와 채무 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부속약관에 따릅니다.

제2조 (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가 발행하거나 배서·보증·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 금융회사는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이자등과 지연배상금)

- 리스료·할부금·이자·할인료·보증료·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계산방법·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채무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시에 채무자가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가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약속하는 것
 -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는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 제2항 제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 및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시정 변화가 생긴 때에는 금융회사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해소된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기로 합니다.
- 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금융회사의 인상·인하는 건전한 금융환경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에 약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시장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재판·상관선 등에 따릅니다.
-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이고 금융시장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 제4항 제호를 선택한 경우 채무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중인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제1호에 따른 기한전의 임의상환 수수료는 면제하기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회사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중인 지연배상금을 등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 제5항의 지연배상금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 약정이자율은 그 중의 「상법」 제54조제6항 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환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를 적용

제4조 (비용의부담)

- 채무자는 채무부이행 또는 기한이외의 상환사유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 채무자·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채권·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보전(해지 포함)에 관한 비용
 - 담보목적물 추수·차상·처분에 관한 비용
 - 채무이행 지체 등에 독촉을 위한 통지비용
- 제1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거나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금액을 갠, 그 값이 아니하는 때에는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대신 지급한 날부터 2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채무회사는 이연약정시 채무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사실대여)의 경우 리스료를 말함), 기한도래일전 상환수수료 및 담보대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반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4조의2 (청약의 철회)

- 청약의 철회와 관련하여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금융회사는 제4항에 따른 채무자가 청약 철회의 의사 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청약 철회에 대한 설명과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금융회사는 제4항에 따른 채무자가 청약 철회의 의사 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청약 철회에 대해 설명하고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제4조의3 (위법계약 해지)

채무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금융회사와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 기타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신용의 용도에 또한 합당합니다.

제6조 (담보)

-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금융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대보증인은 제7조에서 허용한 연대보증인에 한합니다.
-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적 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금융회사는 담보목적물로서 직접담보에 해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제6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에서 그 채권금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합니다. "채무자 등"은 채무자, 설정자,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말합니다.
 -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매되기 어려운 시황이 있는 경우
 - 공정거래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공정한 가격이 산출 가능한 경우
 -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채무자에게 제6조의 내용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는 등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방식을 준수 하였고 채무자의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제2항제호에 따라 담보목적물의 처분이 이루어져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실은 금융회사가 부담한다)
- 임의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채무자 등과 금융회사가 알고 있는 이례관객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해관객이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금융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당해 매매업자가 신청한 예상매각대금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금융회사와 채무자의 요청 등)담보목적물을 즉시 처분한 경우 금융회사가 그와 관련된 모든 분쟁과 책임을 부담합니다)
 - 담보권설정방법
 - 피담보채권의 금액
 - 채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 담보목적물로서 직접 변제에 해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는 이유
 - 금융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당해 매매업자의 정보
- 채무자는 담보에 관하여 목적물의 멸실, 훼손, 처분 기타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킴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현상변경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채무자는 담보에 관하여 그 밖의 현상변경 행위를 하거나 제3자를 위한 권리의 설정 혹은 제3자로의 양도 등의 처행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금융회사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 채무자(기업에 한함)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어음 기타의 유가증권,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금융회사가 계속 점유하거나 제2항에 준하여 추심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7조 (연대보증인)

- 금융회사는 채무자와 여신거래를 할 경우 연대보증인(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이와 유사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약정에 의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하며, 그 이행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동의없이 채무를 제3자로 하여금 인수 또는 승계하게 한 경우 채무자는 면책되지 않고 보증채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 연대보증인은 채무 일부변제 등으로 말미암아 금융회사로부터 취득한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동 거래의 미변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상실하거나 있는 동안에는 금융회사에 있어서 이를 행사하지 않기로 하여, 금융회사와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도 금융회사의 다음으로 변제하기로 합니다.
-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담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보증은 이 보증 약정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따로 한 보증에 한도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위에 이 약정에 의한 한도가 대체하는 것으로 합니다.
- 연대보증인은 채무의 일부변제 또는 채무자의 담보제공 등이 있는 경우 보증의 해지·해제, 보증액의 감액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채무 만기도래 또는 기한연장 시점에서 다른 연대보증인으로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동 요구에 따라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합니다.

제8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요구)

-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며(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조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명령이 도달된 때
 - 채무자가 피गत담보상환(제1항 제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명령이 도달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압류명령이 있는 때
 - 파산, 회생, 개회신청 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 조세관청에 관하여 납진전 징수 처분을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장지처분이 있는 때
 -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 채무자의 과중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제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도달된 때
 - 채무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외 외국인과의 결혼 및 언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때
 -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위·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의 중대한 손실을 유발한 때
-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상실되는 사실(채무자가 기개인 경우 7영업일(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제호를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채무자가 기개인 경우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자, 연대보증인, 담보제공자, 담보제공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제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채무자가 기개인 경우 7영업일(전자가 기개인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채무자가 기개인 경우 7영업일)과 같은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이자 등(연평균합상환율은 원리균분합상환 형식의 리스료 및 할부금 제외)을 지급하기로 한 때부터 계속하여 기입된 경우에도 14일간 지체한 때 기입이 아닌 경우에는 30일(기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
 - 불합상환금 또는 불합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기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적용되는 할부금융거래의 종류에는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액의 10%의을 초과 하는 요건이 충족된 때
-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본래, 압류 또는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금융회사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 제4항 제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 채무자의 제4항 제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권설정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 제5조, 제22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 청산절차 개시, 감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관련기업의 도산, 회사경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된 때
 - 신용정보관리규정이 정한 신용거래정보중 연체정보, 대위변제·대금지정·부도정보·관련연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공공기록정보등 등록된 때
-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해 당해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제6조 제4항, 제8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리스료(기타 담보물에 대한 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금융회사를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권을 양도하여 금융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주택자금대출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담보주택, 또는 시설자금을 받아 설치·완공된 기계·건설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금융회사와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상환 기간 내 보증인을 교체 하지 아니할 때)
 - 제4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불합상환금·불합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기대되는 때, 그 채무 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채무의 기한은 그때부터 부활됩니다.

제9조 (기한이외의 상환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 제8조 제4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외에 상환될 때, 금융회사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장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타의 경우에는 기한이외의 상환사유를 금융회사가 인정한 날로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담보제공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제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이외에 상환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이외에 상환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단, 담보제공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제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 제4항 및 제22조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외의 상환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8조제4항에 해당하여 기한이외에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이외에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10영업일 이내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기로 합니다.

제10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민법 등에 따른 보증인에 대한 통지)

- 이 조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민법에 따른 보증인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 금융회사는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부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서면으로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부보증계약을 갱신할 때도 이와 같습니다.)
-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을 미리한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 전화, 휴대문 문자메시지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금융회사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이행 여부를 서면, 전화, 휴대문 문자메시지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보증인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하며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금융회사가 알게 된 경우에도 보증인에게 서면, 전화 등으로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보증계약 체결 후 금융회사가 보증인의 승낙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0조의2(할부거래법상 철회·항변권 안내)

금융회사는 할부금융거래 시 채무자가 할부철회·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를 할 경우에 채무자가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할부 약정서 관련 서류(전자적 등기 등)를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휴대문 문자메시지로 철회·항변권이 배제되는 경우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명하고 안내하여 그에 관한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11조 (기한전의 입의 상황)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의 수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단, 리스계약의 경우 부속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2조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기재금액에 의한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아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이행일부터 그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게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되거나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②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일이 경과하면 어음의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이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8조 제3항,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 관하여 제8조 제3항,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채무를 모두 갚을 때까지는, 금융회사가 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제2항의 경우에도, 제8조 제5항을 준용합니다.

제13조 (금융회사로부터의 상계 등)

- ① 기한의 도래 또는 제8조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무, 제2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 ② 제항에 있어서와 같이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사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대리환급 변제충당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 ③ 제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경우, 금융회사는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채무자와 보증인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제항에 의한 상계나 제 ②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보증인, 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기로 하며, 채권·채무의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금융회사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금융회사가 대리환급 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되, 그 율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외국환시세는 금융회사가 계산실행 할 때의 시세에 의하기로 합니다.

제14조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 ①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채권과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그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 ②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제항에 의하여 상계를 할 경우, 채무자는 어음금액에서 환매일부서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매채무를 지고,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타인에게 채무자로부터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 ③ 제항, 제2항의 약정에 불구하고, 외화에 대한 채권과 채무에 관하여는, 각각 기한 도래하고 또한 외국권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소정 절차를 밟은 때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 ④ 제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하기로 합니다.
- ⑤ 제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이자, 할인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국환시세는 금융회사가 계산 실행할 때의 시세에 의합니다. 또한 기한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야 합니다.

제15조 (어음의 제시·교부)

- ① 어음에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경우, 금융회사는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4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 ②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항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금융회사가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 ③ 제13조, 제14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기로 한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한 후, 제16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④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지급정부를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금융회사의 변제 등 충당지장)

- 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금융회사가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중단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 ② 변제 또는 상계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행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③ 변제 또는 상계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이익의 상황금 또는 각종 보증금 등으로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이익을 표시하고, 금융회사가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 ④ 금융회사가 변제충당순서를 제3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바와 달리할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채무자의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기로 합니다.

제17조 (채무자의 상계충당지장)

- ① 채무자가 제14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합니다.
- ② 채무자가 제항의 상계충당지장을 아니하거나 제항의 지장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금융회사가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합니다.

제18조 (위험부담·면책조항)

- ①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 금융회사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금융회사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된 후 갚기로 합니다.
- ② 채무자는 제항의 분실·손상·멸실의 경우에 금융회사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③ 제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항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금융회사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 ④ 금융회사가 어음이나 제 증서 등의 인멸·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강·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만들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증서등과 도장·서명에 관하여 위조·변조·등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내면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제19조 (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 ① 채무자 및 보증인은 거래에 필요한 각각의 명칭·성명·상호·대표자·주소 등과 인강·서명을 금융회사가 정한 서면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합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성명·인강·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 ② 제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채무자 및 보증인은 각각의 정보를 지체없이 금융회사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고 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지기로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회사는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제20조 (자료의 성실작성의무)

채무자 및 보증인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기로 합니다.

제21조 (통지의 효력)

- ①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② 채무자 및 보증인은 제19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내용중명유면이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③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전달일을 장부 등에 영백할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22조 (회보와 조사)

- ① 채무자는 그의 재산·부채현황·경영·업황 또는 용자조건의 이행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금융회사가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공장·사업장 기타의 조사를 하는 경우 협조하기로 합니다.
- ② 채무자는 그 재산·영업·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요구가 없더라도 이를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③ 금융회사는 제항 또는 제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부실어신의 보유, 경영 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여신거래조건변경)

- ① 금융회사는 국가경제 및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중 2가지이상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알리고 여신한다. 여신인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채무자는 제항에 의하여 여신한다. 여신인기의 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의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이 내에, 금리의 경우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기한전의 합의상환 수수료는 면제하고,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거래조건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 ③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한다. 여신인기 등 여신거래조건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23조의2 (금리인하요구권)

- ①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화, 서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정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개인사업자 포함) : 채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정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자체 실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금리인하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자료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에 채무자에게 금리인하 심사결과 등을 전화, 서면, 휴대문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③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자의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여부 등을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계약체결시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2.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 ④ 채무자는 금융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⑤ 금융회사는 제항의 금리인하 요구권과 관련하여 금리인하요구 요건, 신청 및 통지절차 등을 마련하여 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등을 이용하여 알립니다.

제24조 (이행장소·준거법)

-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금융회사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 ②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타당한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25조 (약관·부속약관 변경)

- ① 금융회사가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할 경우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이전까지 홈페이지에 변경약관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이 변경된 직후 게시합니다.
 1.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약관 변경권고(명령)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
 2. 약관 개정이 채무자에게 유리한 경우
 3.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채무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4.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인 경우
- ② 제항의 약관변경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일 때 때에는, 제항의 게시 외에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이전까지제항의 단서에 해당할 경우 약관 변경 직후)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문 메시지 등 17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금융회사는 제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채무자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26조 (관할법원의 합의)

- ① 이 약관에 타당한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② 할부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개인(신용)정보 필수 동의서

귀하는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조회 및 제공 동의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조회 및 제공에 관한 동의는 상거래관계의 설정, 유지에 필수적이거나, 상거래관계에 따라 귀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적 사항이므로, 아래의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① 수집·이용 목적에 관한 사항

| | |
|-----------|--|
| 수집·이용 목적 | 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신청 상품 서비스 제공, 법령상 의무 이행, 신용질서 문란행위 조사, 분쟁처리, 전화상담 업무, 민원처리, 본인 여부 확인 |
| 보유 및 이용기간 |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 (단,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위 보유 기간에서의 거래 종료일이란 "회원탈퇴 또는 채권·채무 관계가 소멸된 날"을 말한다. |

| 수집·이용 항목

| | |
|----------|--|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본인)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보증인)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
| 개인(신용)정보 | 성명, 신분증 발급일/발급처/발급번호/유효기간, 영문명, 연락처(휴대폰, 자택, 직장), 주소(자택, 직장), 이메일, 직장명, 직종, 부서, 직위, 성별, 국적, 음성data, ci값, 차량번호, 차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타 계약 및 서비스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등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일반개인정보 |
| 신용거래정보 | 여신성거래정보, 그 외 금융거래정보, 상거래정보 |
| 신용도판단정보 | 신용질서 문란정보, 연체정보 |
| 신용능력정보 | 직업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채무정보, 납세실적 정보 |
| 공공정보 등 | 인적정보, 체납정보, 채무조정정보, 개인신용평점, 공적장부 정보, 공공요금 납부정보, 주민등록 관련 정보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본인)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보증인)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

② 조회에 관한 사항

| | |
|-------------|--|
| 조회 대상 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나이스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한국기업데이터(주) |
| 조회 목적 | 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통계분석 및 정책판단의 자료 활용, 총당금 산출, 신용 관련 모형 개발 및 분석 자료로 활용 |
|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 당사의 조회 결과 귀하와의 (금융)거래가 개시되는 경우 해당 (금융)거래종료일까지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당사의 조회 결과 귀하가 신청한 (금융)거래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단, 현재 거래가 유효한 고객의 경우 새로운 거래가 거절된 경우에도 거래 거절 건에 대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

| 조회 항목

| | |
|----------|--|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조회 에 동의하십니까? (본인)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보증인)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
| 개인(신용)정보 | 성명, 영문명, 연락처(휴대폰, 자택, 직장), 주소(자택, 직장), 이메일, 직장명, 직종, 부서, 직위, 성별, 국적, 음성data, ci값, 사업자등록번호 |
| 신용거래정보 | 여신성거래정보, 그 외 금융거래정보, 상거래정보 |
| 신용도판단정보 | 신용질서 문란정보, 연체정보, 신용조회기록 |
| 신용능력정보 | 직업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채무정보, 납세실적 정보 |
| 공공정보 등 | 인적정보, 체납정보, 채무조정정보, 개인신용평점, 공적장부 정보, 공공요금 납부정보, 주민등록 관련 정보 위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본인)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보증인)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

③ 제공에 관한 사항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회사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 | |
|----------------|--|
| 제공받는 자 | 한국신용정보원, 나이스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 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을 위한 신용조회업무 수행,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법령에서 정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수행, 본인의 신용 판단 및 본인확인 등 법령에서 정한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수행,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에 따른 업무 수행 |
|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약에 근거한 기간까지 |
|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하는 아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는 상거래관계의 설정, 유지에 필수적이거나, 상거래관계에 따라 귀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적 사항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제공 항목

| | |
|----------|---|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위 <u>고유식별정보</u>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본인)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보증인)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
| 개인(신용)정보 | |
| 일반개인정보 | 성명, 영문명, 연락처(휴대폰, 자택, 직장), 주소(자택, 직장), 이메일, 직장명, 직종, 부서, 직위, 성별, 국적, 음성data, ci값 |
| 신용거래정보 | 여신성거래정보, 그 외 금융거래정보, 상거래정보 |
| 신용도판단정보 | 신용질서 문란정보, 연체정보 |
| 신용능력정보 | 직업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채무정보, 납세실적 정보 |
| | 위 개인신용정보 <u>제공</u> 에 동의하십니까? (본인)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보증인)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

(2) 여신금융협회 등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 | |
|----------------|---|
| 제공받는 자 | 여신금융협회, 국세청, 관세청, 행정안전부, 건강보험공단 |
|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의무 이행 |
| 보유 및 이용기간 | 본 기관이 준수하여야하는 관련 법령의 보존기간을 따름 |

제공 항목

| | |
|----------|--|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위 <u>고유식별정보</u>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본인)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보증인)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
| 개인(신용)정보 | |
| 일반개인정보 | 성명, 주소(자택), 연락처(휴대폰, 자택), 사용본거지, 과세자료 |
| 신용거래정보 | 여신성거래정보, 그 외 금융거래정보, 상거래정보 |
| 신용능력정보 | 직업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차량번호, 차대번호, 차종 등), 채무정보, 납세실적 정보 |
| | 위 개인신용정보 <u>제공</u> 에 동의하십니까? (본인)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보증인)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

(3) 계열사 등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 | |
|-------------|---|
| 제공받는 자 | Mercedes-Benz Group AG(독일), Mercedes-Benz Mobility AG(독일) |
|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 실적분석·보고 및 감사, 위험관리 본사보고 및 기간별 결산 |
|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 목적 달성시까지 |
|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하는 아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는 상거래관계의 설정, 유지에 필수적이거나, 상거래관계에 따라 귀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적 사항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 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제공 항목

| | |
|----------|---|
| 개인(신용)정보 | |
| 일반개인정보 | 이름, 계약번호, 고객번호, 은행계좌번호, 차량번호, 차대번호, 직장명, 업태/업종, 국적, 차량 모델명, 차량등록일 |
| 신용거래정보 | 개인신용평점, 거래기간, 계약시작일, 계약종료일, 거래승인일, 거래실행일, 거래상태, 고객구리, 대출금액, 연체금액, 근저당설정액, 차량가격, 선수금, 선납금, 보증금, 이자율, 월납입금, 근저당 설정여부, 대출잔액, 채무조정여부, 연체일수, 미회수채권잔액, 기타 미수금 잔액, 차량 잔존가치, 유예금 등 거래 내용 및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 | <div style="text-align: right;">(본인) <input type="checkbox"/>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동의함</div> <div style="text-align: right;">(보증인) <input type="checkbox"/>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동의함</div> |
| |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4) 자동차 판매사,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 | |
|-------------|---|
| 제공받는 자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경남자동차판매(주), 교학모터스(주), 더클래스호성(주), ㈜모터원, 스타자동차(주), 신성자동차(주), 중앙모터스(주), 진모터스(주), 케이씨씨오토(주), 한성모터스(주), 한성자동차(주)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등록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
|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 공동마케팅/프로모션 비용 정산, 위탁업무 수수료 등 정산 |
|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 목적 달성시까지 |
|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하는 아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는 상거래관계의 설정, 유지에 필수적이거나, 상거래관계에 따라 귀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적 사항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 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제공 항목

| | |
|----------|---|
| 개인(신용)정보 | |
| 일반개인정보 | 차량 번호, 차대번호, 직장명 |
| 신용거래정보 | 거래기간, 대출금액 등 거래 내용 및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 | <div style="text-align: right;">(본인) <input type="checkbox"/>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동의함</div> <div style="text-align: right;">(보증인) <input type="checkbox"/>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동의함</div> |
| |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개인(신용)정보 선택 동의서



(1) 금융상품 안내 및 이용권유를 위한 수집·이용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위 등급은 사생활 침해 위험, 혜택,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내용의 평가등급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자세한 사항 QR코드 참조)

| | |
|-------------|---|
| 수집·이용 목적 | 경품지급, 사은행사, 판촉행사, 고객의 편의 제공, 시장조사 및 상품·서비스 연구개발, 귀사의 금융상품·서비스 및 제휴사의 자동차 상품·서비스 안내 및 이용권유 및 연락 |
| 보유 및 이용기간 | 거래 종료일까지 위 보유 기간에서의 (금융) 거래 종료일이란 회원탈퇴 또는 채권·채무 관계가 소멸된 날을 말한다. |
|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하는 아래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금융상품과 관련된 신상품(서비스)소개, 편의 제공(경품, 사은품, 특판관리 등), 안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당사와의 금융 계약이 있으신 경우, 본 동의서의 동의 여부가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

수집·이용 항목

| | | | |
|----------|--|---------------------------------------|---|
| 개인(신용)정보 | | | |
| 일반개인정보 | 성명, 이메일, 직장명, 부서, 직위, 성별, 국적, 음성data, C값, 자택주소, 직장주소, 연락처(휴대폰, 자택, 직장) | | |
| 신용거래정보 | 대출 정보, 보증정보, 담보정보, 신용카드 정보, 할부금융정보 등 | | |
| |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input checked="" type="radio"/> 다소안심 | <input type="radio"/>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radio"/> 동의함 |

| | | |
|----------|--|---|
| 상품서비스 안내 |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광고성 정보의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input type="radio"/>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radio"/> 동의함 |
| | 문자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전화 <input type="checkbox"/> DM <input type="checkbox"/> | |

※ 금융상품 안내 및 이용권유에 동의하셨더라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 권유 목적의 연락에 대한 중단을 언제라도 당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 1577-2320/ 홈페이지 : <https://benzfs.com>)

(2) 자동차 금융상품의 대상이 되는 차량의 위치 정보 수집·이용

1 수집·이용 목적에 관한 사항



※ 위 등급은 사생활 침해 위험, 혜택,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내용의 평가등급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자세한 사항 QR코드 참조)

● 위치정보 수집장치 부착에 관한 고지

귀하가 자동차 금융상품(할부 및 리스 등)을 통해 사용하게 되는 차량에는 위치정보 수집 장치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위치정보는 해당 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하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식회사(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습니다.

| | |
|-------------|--|
| 수집·이용 목적 | 당사가 제공하는 자동차 금융상품(할부 및 리스 등)의 대상이 되는 차량의 반납 거부, 관련 채무 불이행, 횡령,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해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당한 이익과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차량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여 차량의 점유를 회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계약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Skip Loss" 기능이라고 합니다. |
| 보유 및 이용기간 | 차량의 점유 회복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 점유 회복시까지 (자동차 금융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대상 차량의 점유를 회복해야 할 필요가 존재한다면 그러한 목적이 달성되는 시점까지 보유·이용합니다.) |
|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하는 아래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차량의 도난, 분실 시 차량의 점유를 회복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

수집·이용 항목

| | | | |
|----------|---|-------------------------------------|---|
| 개인(신용)정보 | | | |
| 일반개인정보 | 자동차 금융상품의 대상이 되는 차량의 차량번호, 위치정보, 성명, 자택주소, 직장주소, 연락처(휴대폰, 자택, 직장) | | |
| 신용능력정보 | 자동차 금융상품의 대상이 되는 차량의 차대번호 | | |
| |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input checked="" type="radio"/> 안심 | <input type="radio"/>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radio"/> 동의함 |

